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7
----------	------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의자 : 이찬열 · 황주홍 · 권칠승
전혜숙 · 윤호중 · 김종회
김정우 · 최도자 · 위성곤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 차보고)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p> <p>1. ~ 9. (생 략)</p> <p><u><신 설></u></p> <p><u>10. (생 략)</u></p>	<p>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 차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 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u></p> <p><u>11. (현행 제10호와 같음)</u></p>